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우재준 · 김태호 · 고동진  
윤영석 · 강명구 · 서천호  
김위상 · 박정하 · 김소희  
서범수 · 박충권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,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.

특히,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영·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.

그러나 현행 「물환경보전법」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,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,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
(안 제21조의4제8항·제9항,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).

##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설치기준 및 운영”을 “설치기준”으로 한다.

⑧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82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<p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2의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.</p> <p>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3. 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